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34조의2 <별표5>

구 분	내용 및 기준
체격	국립·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신체검사 및 약물검사의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직무에 적합한 신체를 가져야 한다.
시력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이어야 한다.
색신 (色神)	색각이상(약도 색약은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청력	청력이 정상[좌우 각각 40데시벨(dB) 이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이어야 한다.
혈압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수은주밀리미터(mm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혈압이 90수은주밀리미터(mmHg)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또는 저혈압[수축기혈압이 90수은주밀리미터(mmHg) 미만이거나 확장기혈압이 60수은주밀리미터(mmHg)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사시 (斜視)	복시(複視: 겹보임)가 없어야 한다. 다만, 안과전문의가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진단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문신	내용 및 노출 여부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이 없어야 한다.

[비고]

위 "체격" 항목 중 "직무에 적합한 신체"와 "문신"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붙임2-1****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신체검사 기준표(101경비단)**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제11조 &lt;별표3&gt;

구 분 부분별	신 체 조 건
신 장	170cm 이상이어야 한다.
체 중	60kg 이상이어야 한다.
흉 위	신장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시 력	양안의 나안시력이 각각 1.0 이상이어야 한다.(단, 교정시력 불가)

[비고]

위 항목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5를 따른다.

**붙임3**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신체검사 세부기준**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1>

평가 항목	내 용	신체검사기준(불합격 판정기준)	
직무에 적합한 신체	팔 다 리 와 손·발가락	팔다리와 손·발가락이 강직, 절단 또는 변형된 기형으로 정형외과 전문의로부터 경찰 장비 및 장구 사용 등 직무수행에 적합하다는 진단을 받지 못한 사람	
	척추만곡증 (허리 휘는 증상)	X-RAY촬영 결과 20도 이상 허리가 기울어져 있는 자로 정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정상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	
	상지관절의 정상 여부	상지 3대 관절(손목·팔꿈치·어깨관절)을 앞과 위 아래로 이동시 자연스럽게 않은 사람 중 상지의 3대 관절이 불완전하거나 관절의 기능손실이 15퍼센트 이상이거나 3대 관절의 손실 합이 15퍼센트 이상으로 정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정상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	
	하지관절의 정상 여부	하지 3대 관절(발목·무릎·고관절)을 좌우로 돌리는 것이 자연스럽게 않은 사람 중 하지의 3대 관절이 불안정하거나 관절의 기능 손실이 15퍼센트 이상이거나 3대 관절의 손실 합이 15퍼센트 이상으로 정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정상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	
문신	내 용	혐오성	사회 일반인의 기준으로 판단하여 폭력적·공격적이거나 공포감을 조성할 수 있는 내용
		음란성	사회 일반인의 기준으로 판단하여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
		차별성	특정 인종·종교·성별·국적·정치적 신념 등에 대한 차별적 내용
		기 타	범죄단체 상징 및 범죄를 야기·도발할 수 있거나 공직자로서의 직업윤리에 어긋나 경찰관의 이미지를 손상시킬 수 있는 내용
	노출 여부	모든 종류의 경찰 제복(성하복 포함)을 착용하였을 경우 외부에 노출되어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 (얼굴, 목, 팔, 다리 등 포함)	

[비고]

위 신체검사기준(불합격 판정기준) 중에서 하나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체검사에 불합격한 것으로 본다.